

II.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1. 제2부 제2장 내지 제10장, 제13장 및 제14장, 제19장에 분류된 분류항목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 요양기관의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가산한다.

가. 다음 각 항의 요양기관은 30%

- (1)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정받은 종합병원
- (2)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 (3)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특수전문병원

나. 다음 각 항의 요양기관은 25%

- (1)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
- (2)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 (3) 허가 병상 수가 30병상 이상이고, 한방 6개 과가 설치되어 있는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 (4) 국립병원 한방진료부

다. 다음 각 항의 요양기관은 20%

- (1) 병원
- (2) 위 “가-(2)” 또는 “나-(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치과병원
- (3) 위 “나-(3)”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방병원
- (4) 요양병원

라. 다음 각 항의 요양기관은 15%

- (1) 의원
- (2) 치과의원
- (3) 한의원
- (4) 보건의료원

마. 다음 각 항의 요양기관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약국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 (2) 조산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3) 의료법 제35조에 의한 부속 의료기관

제7장 이학요법료

제1절 기본물리치료료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사-101	MM010	주 : 1. 해당 항목의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2. 표층열치료, 한냉치료,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 간섭파전류치료는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9.79
	MM015	표층열치료 Superficial Heat Therapy 주 : 1. 온습포, 적외선치료 등을 포함한다. 2. 같은날 「사-102」와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 점수의 50%를 산정한다.	
사-101-1		한냉치료 Cold Therapy 주 : 1. 한냉치료와 온열치료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한 가지만 산정한다. 2. 장비에 불문하고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MM011	가. 콜드팩 Cold Pack	10.16
	MM012	나. 냉동치료 Cryotherapy	14.77
사-102	MM020	심층열치료 [1일당] Deep Heat Therapy 주 : 초음파치료, 극초단파치료, 초단파치료 등을 포함한다.	13.57
사-103	MM030	자외선치료 [1일당] UV Ray Irradiation	5.68
사-104	MM070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41.36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사-105	MM080	주 : 간섭과전류치료(Interferential Current Therapy) 를 실시한 경우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52.73
	MM090	마사지치료 [1일당] Massage Therapy 주 : 근마비로 인한 연부조직위축, 감염 및 외상으로 인 한 연부조직유착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기로 2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사-106	MM101	단순운동치료 [1일당] Simple Therapeutic Exercise 주 : 1. 근육기능장애와 관절기능장애에 대해 각종 운동, 자세교정운동 등을 포함하여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제2절에 분류된 운동치료 또는 제3절에 분류된 재활기능치료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57.03

제2절 단순재활치료료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주 : 1. 해당 항목의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흉부외과 또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여야 하며,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2. 간헐적 견인치료, 전기자극치료는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사-110	MM042	파라핀욕 [1일당] Paraffin Bath	29.92
		주 : 한센병전문요양기관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도 산정한다.	
사-111		수치료 [1일당] Hydrotherapy	
	MM041	가. 증기욕치료 Steam Bathing	45.53
	MM043	나. 정규욕조치료 Regular Tub	79.19
		주 : 20분 이상 전신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MM049	다. 대조욕치료 Contrast Bath	79.30
		라. 회전욕치료 Whirl Pool Bath	
	MM044	(1) 수, 족, 지 Extremities	72.84
	MM045	(2) 전신 Whole Body	87.17
	MM046	마. 하버드탱크 치료 Hubbard Tank	117.46
사-111-1	MM170	유속치료 [1일당] Fluidotherapy	41.73
사-112		간헐적 견인치료 Intermittent Traction Therapy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사-113	MM051	가. 경추견인 Cervical	75.14
	MM052	나. 골반견인 Pelvic	75.08
	MM060	전기자극치료 Electrical Stimulation Therapy 주 : 마비근자극치료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63.98
사-115	MM085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 [1일당] Laser Therapy	64.39
사-116		운동치료 [1일당] Therapeutic Exercise 주 : 「가」, 「나」 및 제1절에 분류된 단순운동치료, 제3절에 분류된 재활기능치료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MM102	가. 복합운동치료 Complex 주 : 전산화된 등속성운동기구를 제외한 기계(기구)를 사용한 근력강화운동과 기능훈련 등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93.16
	MM103	나. 등속성 운동치료 Isokinetic 주 : 전산화된 평가 및 치료가 가능한 등속성운동기구를 사용하여 근력운동을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100.99
사-117	MM161	운동점차단술 [근육당] Motor Point Block 주 : 동 시술시 사용된 약제, 신경파괴제 등은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333.75
사-119	MM190	압박치료 [1일당] Pneumatic Compression	65.42
사-120	MM200	복합림프물리치료 [1일당] Complex Decongestive Physical Therapy 주 : 제1절에 분류된 마사지치료, 단순운동치료 또는 제2절에 분류된 운동치료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118.63
서-121	MX121	이온삼투요법 [1일당] Iontophoresis	63.10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주 : 사용한 스테로이드 약제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라 실사용량으로 산정하며, 사용된 재료대 등은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3절 전문재활치료료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주 : 1. 해당항목의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작업치료, 일상생활 동작 훈련치료, 재활사회사업, 연하장애재활치료, 연하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 제외) 또는 해당분야 전문치료사(작업치료사는 작업치료, 일상생활 동작 훈련치료, 연하장애재활치료, 연하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를 한하고, 사회복지사는 재활사회사업에 한함)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작업치료, 신경인성방광 훈련치료, 기능적전기자극치료, 재활기능치료는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3.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순작업치료와 복합작업치료는 정형외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작업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 4.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막동통유발점주사 자극치료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동통재활분야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사-121	MM047	풀치료 [1일당] Pool Therapy 가. 보행풀치료 Walking Pool Therapy	223.44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사-122	MM048	주 : 뇌졸중, 두부손상, 신경계의 이상 등으로 대기중에서 체중부하가 불가능한 경우 보행 및 보행에 필요한 하지근력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1인의 물리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1대 1로 중점적으로 30분정도 풀내의 평행봉을 이용한 혼자서기, 체중이동, 균형 잡기 등의 훈련을 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나. 전신풀치료 Whole Body Pool Therapy 주 : 근육, 신경계 이상 등으로 대기중에서는 체중부하가 곤란하여 스스로 근력강화 및 유연성 등의 훈련이 불가능한 경우에 풀 내에서 1인의 물리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1대 1로 중점적으로 30분 이상 튜브 등과 같은 기구를 이용하여 사지의 움직임을 이용한 여러가지 동작훈련을 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328.66
	MM105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Rehabilitative Development Therapy for Disorder of Central Nervous System 주 : 중추신경계 장애로 인한 발달지연 및 근육마비와 경직의 치료를 목적으로 보이타 또는 보바스요법 등의 교육과정을 120시간 이상 이수한 재활의학과 전문의나 물리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1대 1로 중점적으로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33.65
	MM111	작업치료 Occupational Therapy 가. 단순작업치료 Simple 주 : 1인의 작업치료사가 2인 이상의 환자를 상대로 동시에 10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61.19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사-124	MM112	나. 복합작업치료 Complex 주 : 1인의 작업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1대 1로 중점적으로 10분 이상~30분 정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103.63
	MM113	다. 특수작업치료 Special 주 : 1인의 작업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1대 1로 중점적으로 30분 이상 다양한 치료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150.81
	MM114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 [1일당] Activities of Daily Living Training 주 : 1인의 작업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1대 1로 중점적으로 식사, 옷입고 벗기, 배변 및 위생훈련 등 일상생활동작 적응 훈련을 최소 2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141.17
	MM120	신경인성 방광훈련 치료 Neurogenic Bladder Training 주 : 척수손상, 뇌졸중, 두부손상, 말초신경손상 등으로 인해 스스로 배뇨를 하지 못하는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 배뇨반사를 자극하고 방광내압의 증가, 요도괄약근이완 등의 방법으로 배뇨를 유도하면서 간헐적으로 도뇨를 시행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이 경우 도뇨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207.61
	MM151	기능적전기자극치료 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Therapy 주 : 기능적전기자극치료는 환자에게 최소 2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185.88
사-127	MM131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1일당] Myofascial Trigger Point Injection Therapy	75.93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사-128	MM132	주 : 1. 근막내 동통유발점에 생리식염수나 국소마취제 등을 주사후 스트레치운동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동시에 2 이상의 동통유발점 부위에 각각 실시한 경우에는 실시부위를 불문하고 116.75점을 산정한다. 재활사회사업 Rehabilitative Social Work 주 : 1. 재활의학적 치료목적으로 사회복지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2. 「가」는 치료기간 중 1회만 산정한다. 3. 「나」, 「다」는 각각 주 1회 산정하되, 치료기간 중 2회 이내만 산정한다.	
	MM141	가. 개인력조사 Individual History Taking	190.37
	MM142	나. 사회사업상담 Social Work Counselling	118.46
	MM143	다. 가정방문 Home Visiting	396.98
사-129	MM290	호흡재활치료 [1일당] Rehabilitative Breathing Therapy 주 : 유발성흡기폐활량계 등 기구를 사용한 호흡운동, 체위배액치료 등 호흡재활치료를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83.05
사-130		재활기능치료 Rehabilitative Functional Training 주 : 제1절에 분류된 단순운동치료, 제2절에 분류된 운동치료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MM301	가. 매트 및 이동치료 Mattress or Mobilization Training 주 : 편마비, 하지마비, 사지마비, 뇌성마비 등의 중추신경계 질환이나 사지절단자 등 이동동작에 제한이 있는 자에게 매트훈련, 이동훈련, 경사대훈련 및 의자차훈련 등을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180.84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사-131	MM302	나. 보행치료 Gait Training 주 : 편마비, 하지마비, 사지마비, 뇌성마비 등의 중추신경계 질환이나 사지절단자 등 보행동작에 제한이 있는 자에게 보행훈련을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176.86
	MZ008	연하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 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for Rehabilitative Dysphagia Therapy 주 : 1. 중추신경계질환 등으로 인한 연하장애환자에게 30분 이상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191.27
서-141	MX141	연하장애재활치료 Rehabilitative Dysphagia Therapy 주 : 1. 중추신경계질환, 식도 또는 기관의 질환 등으로 인한 연하장애환자에게 1인의 작업치료사가 1:1로 30분 이상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201.68

제4절 기타 이학요법료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사-30	MM300	적외선치료 [1일당] Infra Red Ray Irradiation	8.26
사-30-1	MM303	상기도 증기흡입치료 Humidification of Upper Airway 주 : 1. 급·만성 후두염에 한하여 산정하되, 적외선치료 (사-30)와 동일 실시한 경우에는 상기도 증기흡입치료의 소정점수만을 산정한다. 2. 외래는 주 2회, 입원은 1일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3. Disposable Nebulizer Kit, Mask 재료대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19.11
사-31	MM310	자외선치료 [1일당] Ultraviolet Ray Irradiation	6.44
사-32	MM320	약욕 [1일당] Drug Bathing 주 : 각종 약물을 혼합한 약수에 전신욕을 20~30분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108.33
사-33		피부과적 자외선치료 [1일당] Dermatological Ultraviolet Ray Therapy 주 : 피부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MM331	가. 상지(하지의 반)의 대부분의 범위 또는 두부, 경부 및 안면의 대부분의 범위 [9%의 범위]	57.61
	MM332	나. 하지의 1지, 복부 또는 배부에 준하는 범위 [18%의 범위]	63.59
	MM333	다. 양하지 또는 동체(복부 및 배부)에 준하는 범위 [36%의 범위]	69.55
	MM334	라. 전신대부분의 범위 [37% 이상의 범위]	77.55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사-34		피부광화학요법 [PUVA, Goeckermann, Ingram 등] [1일당] Dermatologic Photochemotherapy 주 : 1. 피부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2. 건선, 유건선, 균상식육종, 편평태선, 장미색비강진 등에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MM341	가. 상지(하지의 반)의 대부분의 범위 또는 두부, 경부 및 안면의 대부분의 범위 [9%의 범위]	125.52
	MM342	나. 하지의 1지, 복부 또는 배부에 준하는 범위 [18%의 범위]	145.28
	MM343	다. 양하지 또는 동체(복부 및 배부)에 준하는 범위 [36%의 범위]	163.46
	MM344	라. 전신대부분의 범위 [37% 이상의 범위]	230.27
사-35	MM350	고빌리루빈혈증에 대한 광선요법 [1일당] Phototherapy for Hyperbilirubinemia 주 : 신생아황달을 치료한 경우에 산정한다.	184.17
사-36	MM360	간헐적호흡치료 (양압호흡 또는 음압호흡) [1일당] Intermittent(Positive or Negative) Pressure Breathing Treatment	526.25
사-38	MM380	Air Fluidized Therapy [실리콘 베드] [1일당]	544.08
사-40	MM400	양위 양압호흡치료 [1일당] BIPAP Treatment	1,311.27
사-41	MM410	수압팽창술 Hydraulic Distention 주 : 1. 투시비용 및 치료과정 중의 스트레치운동비용은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사용된 국소마취제, 생리식염수를 제외한 스테로이드제, 조영제 등의 약제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라 실사용량으로 산정한다.	441.70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사-42	MM420	신경인성 장훈련 치료 [1일당] Neurogenic Bowel Training 주 : 척수손상, 뇌졸중, 두부손상, 말초신경손상 등으로 인해 스스로 배변을 하지 못하는 신경인성 질환자에게 손가락 자극, 손가락을 이용한 분변제거, 복부마사지 등의 방법으로 배변반사를 자극하고 배변을 유도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이 경우 직장분변제거술 및 직장마사지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164.96
사-43	MM430	고빈도 흉벽진동요법 [1일당] High Frequency Chest Wall Oscillation 주 : 호흡재활치료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105.02
사-44	MM440	만성호흡부전 재활치료[1일당] 가. 폐질환 운동재활치료 Rehabilitation Exercise for Pulmonary Disease	608.70
	MM441	나. 호흡근부전 재활치료 Pulmonary Rehabilitation for Respiratory Muscle Dysfunction	790.34
사-45		심장재활 Cardiac Rehabilitation	
	MM451	가. 심장재활교육 Cardiac Rehabilitation Education	268.38
	MM452	나. 심장재활평가 Cardiac Rehabilitation Evaluation	1,029.19
	MM453	다. 심장재활치료 Cardiac Rehabilitation Therapy	470.26
서-31	MX031	항문직장 및 골반근의 생체피드백치료 [1일당] Anorectal and Pelvic Muscle Biofeedback	336.74
서-32	MX032	분사신장치료 [1일당] 주 : 치과 의사가 근막내 동통유발점에 기화성 냉각제 분사후 스트레치운동을 시술한 경우에 산정하되 사용된 냉각제의 비용은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151.35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서-34	MX034	요실금 전기자극 치료 [1일당] Electrical Stimulation for Urinary Incontinence	103.66
서-35	MX035	체위성안진교정치료 [기기 사용료 포함] Canalith Reposition Therapy 주 : 1. 양성발작성체위성현기증환자에게 관석정복술을 15분 이상 직접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346.18
서-36	MX036	악관절고착해소술 [1일당] 주 : 치과 의사가 측두하악장애환자의 급·만성 과두결림이 있는 경우 하악과두운동을 도수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169.24